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00

발의연월일: 2021. 6. 9.

발 의 자:서영교・민병덕・박 정

서삼석 · 송재호 · 오영환

이용우 · 임오경 · 임호선

한병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특별법」 또는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.

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,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·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 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2조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	제42조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		
① 「초・중등교육법」 및	①		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			
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			
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			
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			
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			
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			
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등"이			
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			
는 기숙사(「한국사학진흥재단			
법」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			
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)로			
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			
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			
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			
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			
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			
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			
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한정한	<u>_</u>		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각	<u>20</u>		
각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제	<u>24년 12월 31일</u> .		
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			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
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